

（韓国語：個人営業者用）

서 약 서

（개인영업자용）

저는 고물영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9 호까지 명시된

- 1 파산절차개시 결정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2 구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, 또는 제 31 조에 규정하는 죄 또는 형법 제 235 조, 제 247 조, 제 254 조 또는 제 256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고물영업법시행규칙 제 1 조 각호에 명시된 죄에 하나라도 해당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-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또는 제 12 조 6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법 제 12 조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로 해당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
- 6 제 24 조 규정에 따라 그 고물영업 허가를 취소 당해,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(허가를 취소 당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시된 날의 60 일전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.)
- 7 제 24 조 규정에 의해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지된 날부터 취소 당한 날 또는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 사이에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반납한 자 (그 고물영업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함)로, 그 반납일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.
- 8 심신 장애로 고물상 또는 고물시장주의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
- 9 영업에 관해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가지지 않는 미성년자. 단 그 자가 고물상 또는 고물시장주의 상속인으로,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각 1 호부터 8 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.

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.

공안위원회 귀중

년 월 일

주소

성명

(韓国語：法人役員用)

서 약 서

(법인임원용)

저는 고물영업법 제 4 조 제 1 항 제 1 호부터 제 8 호까지 명시된

- 1 파산절차개시 결정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2 구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, 또는 제 31 조에 규정하는 죄 또는 형법 제 235 조, 제 247 조, 제 254 조 또는 제 256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3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고물영업법시행규칙 제 1 조 각호에 명시된 죄에 하나라도 해당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- 4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또는 제 12 조 6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법 제 12 조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로 해당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5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
- 6 제 24 조 규정에 따라 그 고물영업 허가를 취소 당해,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(허가를 취소 당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시된 날의 60 일전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.)
- 7 제 24 조 규정에 의해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지된 날부터 취소 당한 날 또는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 사이에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반납한 자 (그 고물영업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함)로, 그 반납일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.
- 8 심신 장애로 고물상 또는 고물시장주의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

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.

공안위원회 귀중

년 월 일

주소

성명

(韓国語：管理者用)

서 약 서

(관리자용)

저는 고물영업법 제 13 조 제 2 항에 명시된

- 1 미성년자
- 2 파산절차개시 결정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 구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, 또는 제 31 조에 규정하는 죄 또는 형법 제 235 조, 제 247 조, 제 254 조 또는 제 256 조 제 2 항에 규정하는 죄를 범해 벌금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됐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4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고물영업법시행규칙 제 1 조 각호에 명시된 죄에 하나라도 해당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
- 5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 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2 조 또는 제 12 조 6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동법 제 12 조 4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를 받은 자로 해당 명령 또는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3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6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
- 7 제 24 조 규정에 따라 그 고물영업 허가를 취소 당해,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(허가를 취소 당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시된 날의 60 일전 이내에 해당법인의 임원이었던 자로 취소 당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.)
- 8 제 24 조 규정에 의해 허가 취소에 관한 청문 기일 및 장소가 공시된 날부터 취소 당한 날 또는 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까지 사이에 제 8 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해 허가증을 반납한 자 (그 고물영업 폐지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제외함)로, 그 반납일부터 기산하여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.
- 9 심신 장애로 관리자 업무를 적절하게 시행할 수 없는 자로서 국가공안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

위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서약합니다.

공안위원회 귀중

년 월 일

주소

성명